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210
----------	-------

발의연월일 : 2026. 9. 8.

발 의 자 : 김남희 · 김용민 · 김의겸
서영교 · 박지원 · 김한규
김동아 · 이성윤 · 박균택
김기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과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법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제1항 중 “지방검찰청”을 “지방공소청”으로 한다.

제122조의 제목 “(검사장에 대한 수사 등 촉탁)”을 “(공소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의 촉탁)”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고등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수사와”를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게 그 소재의 확인과”로 한다.

제178조 중 “군검사, 지방검찰청 검사”를 “군검사”로 한다.

제179조 중 “군검사, 지방검찰청 검사”를 “군검사”로 한다.

제228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대검찰청”을 각각 “중대범죄수사청”으로 한다.

제2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1조의2(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 ① 군사법경찰관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작성·보관·처리할 때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라 국방부가 구축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간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등재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는 송치받거나 송부된 사건에 대하여 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완수사요구 등을 하거나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기록·등재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록·등재 의무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사 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6조의6(피의자 신문 등의 녹음)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제236조의2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의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녹음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면담 등 명칭과 관계 없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하여야 한다.

③ 제236조의2제2항 및 제3항은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영상녹화”는 “녹음”으로, “영상녹화물”은 “녹음물”로, “시청”은 “청취”로 본다.

제2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9조의2(압수·수색·검증의 영상녹화) ①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은 영장이나 제255조 및 제256조에 따라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신체 착용형

촬영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촬영·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녹화장치가 없거나 신속한 수사, 군사보안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촬영·녹화를 하는 경우 피의자, 피해자 및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 인격권 등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촬영·녹화한 영상기록은 그 사실을 적은 서면을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압수·수색·검증의 영상녹화를 위한 구체적인 범위, 절차,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6조 중 “검찰청의 검사”를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의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의 7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으로 한다.

제47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소청 검사 또는 군검사

제474조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제475조제1항 중 “대검찰청”을 “공소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31조의2의 개정규정: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3호나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2. 제236조의6 및 제259조의2의 개정규정: 2027년 8월 5일

제2조(적용례)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
한다.

1. 제231조의2의 개정규정 중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
률 제199조의2에 관한 부분은 개정규정 및 개정부분 시행 이후 수사
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제236조의6의 개정규정 중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
률 제244조의6에 관한 부분은 개정규정 및 개정부분 시행 이후 수사
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제259조의2의 개정규정 중 법률 제21857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
률 제220조의2에 관한 부분은 개정규정 및 개정부분 시행 이후 수사
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1조(관할구역 밖에서의 구속영장 집행과 그 촉탁) ① 군검사는 필요하면 관할구역 밖에서 구속영장 집행을 지휘할 수 있고, 그 구역을 관할하는 군검사 또는 <u>지방검찰청</u> 검사에게 집행 지휘를 촉탁할 수 있다.	제121조(관할구역 밖에서의 구속영장 집행과 그 촉탁) ① ---- ----- ----- ----- -- <u>지방공소청</u>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2조(<u>검사장에 대한 수사 등 촉탁</u>) 피고인의 현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판장이나 군판사는 <u>고등검찰청</u> 검사장 또는 <u>지방검찰청</u> 검사에게 그 <u>수사와 구속영장의 집행</u> 을 촉탁할 수 있다.	제122조(<u>공소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을 촉탁</u>) ----- ----- ----- <u>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에게 그 소재의 확인과</u> ----- -----.
제178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u>군검사, 지방검찰청 검사, 군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와 제119조제2항에 따른 군사법원의 서기, 법원사무관등이</u>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 필요하면 다른 사람의 주거나 관리자가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박 또는 차량에 들어가 피고인을 수	제178조(구속영장 집행과 수색) <u>군검사</u> ----- ----- ----- ----- ----- ----- -----.

색할 수 있다.

제179조(준용규정) 제178조에 따
른 군검사, 지방검찰청 검사,
군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
군사법원의 서기, 법원사무관등
의 수색에 관하여는 제160조 ·
제161조 · 제164조 및 제168조
를 준용한다.

제228조의3(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의 처리) ①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은 제28
6조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수사
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
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
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건
을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에 이첩하여야 한다.

②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
사처,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
은 각 수사기관이 관할하는 사
건으로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
우 그 사건의 이첩을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

제179조(준용규정) -----

-- 군검사-----

-----.

제228조의3(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의 처리) ①

- 중대범죄수사청-----

-----.

② 중대범죄수사청-----

찰관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③·④ (생략)

<신설>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31조의2(수사 및 공소 업무에 대한 전자적 관리) ① 군사법경찰관은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작성·보관·처리할 때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라 국방부가 구축한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제1항에 따라 지체 없이 시간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등재하여야 한다.

② 군검사는 송치받거나 송부된 사건에 대하여 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완수사요구 등을 하거나 공소제기를 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기록·등재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기록·등재 의무의 준수 여부

<신 설>

<신 설>

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사
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6조의6(피의자 신문 등의 녹
음) ①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
은 제236조의2에 따라 영상녹
화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
의자신문의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녹음사
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
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면담 등 명칭과 관계 없이 피
의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피의
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
면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하여
야 한다.

③ 제236조의2제2항 및 제3항
은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에 준
용한다. 이 경우 “영상녹화”는
“녹음”으로, “영상녹화물”은
“녹음물”로, “시청”은 “청취”로
본다.

제259조의2(압수·수색·검증의 영

상녹화) ① 군검사 및 군사법
경찰관은 영장이나 제255조 및
제256조에 따라 압수·수색·검증
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
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신체 착용형 촬
영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촬영·녹화하여야 한다. 다
만, 영상녹화장치가 없거나 신
속한 수사, 군사보안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검사 및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촬영·녹화를 하
는 경우 피의자, 피해자 및 사
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 인
격권 등이 침해되지 아니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촬
영·녹화한 영상기록은 그 사
실을 적은 서면을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압수·수색·검증
의 영상녹화를 위한 구체적인
범위, 절차, 방식 등에 필요한

제286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 사건송치) 군검사는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
지 아니할 때에는 사건을 서류
· 증거물과 함께 재판권을 가
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
청의 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
처의 수사처검사,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치
전에 한 소송행위의 효력은 송
치 후에도 영향이 없다.

제473조(재심청구권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
람은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1. 대검찰청 검사·군검사
2. ~ 4. (생략)

제474조(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69조제7호의 사
유에 따른 재심청구는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그 죄를 범하
게 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검사
또는 군검사가 아니면 하지 못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6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 사건송치) -----

----- 공소
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
의 검사, 중대범죄수사청의 7급
이상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

제473조(재심청구권자) -----

-----.

1. 공소청 검사 또는 군검사
2. ~ 4. (현행과 같음)

제474조(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

----- 공소청 -----

한다. 제475조(변호인의 선임) ① <u>대검</u> <u>찰청</u> 검사 또는 군검사가 아닌 사람이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 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생략)	-----. 제475조(변호인의 선임) ① <u>공소</u> <u>청</u> ----- ----- -----. ② (현행과 같음)
---	--